

춘천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합31849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A와 피고 사이에 2021. 4.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부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6,502,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7. 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이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285,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242,250,000원, 보증기한 2020. 7. 8.(이후 2022. 7. 7.까지로 연장하였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D의 대표이사인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D은 E은행으로부터 2019. 7. 10. 285,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A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 1) A는 2021. 4. 20.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800만 원은 같은 달 21., 잔금 6,000만 원은 같은 달 26. 각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잔금지급일에 인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1.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13.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57,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쳐 있었는데, 2021. 4. 22. 말소되었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D은 2021. 8. 2. 폐업하였고, 2021. 8. 23.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참가인은 2021. 11.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245,840,7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A의 파산 및 면책신청 등

1) A는 2021. 9. 25. 춘천지방법원 2021하단143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2. 4. 21.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6조, 제347조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인권은 소의 제기 뿐만 아니라 항변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인권은 소의 제기만이 아니라 항변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부인권 행사의 한 방식으로 제기된 부인의 소는 소송물이 부인권 자체라기보다는 부인권 행사로

무효가 되는 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의 이행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 청구인 것이다. 따라서 소의 제기만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채권자취소권과는 달리 부인권은 부인을 선언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부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인의 소로 부인권 행사의 결과 무효가 되는 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함으로써 일탈 재산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부인의 선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 선언을 별도로 구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및 참가인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바로 옆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며 D의 자금사정이나 폐업사실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없이 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206,502,9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54,645,640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48,142,648원, 1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시세와 비교할 때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부인 대상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항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되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하거나 다른 파산채권자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9872 판결 등 참조), 매각된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285,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21. 4. 20.경1)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 194,654,382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D은 2021. 1. 25. 춘천세무소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고,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순번	종류	금액(원)	비고
1	예금	4,343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2		760,000	E은행(계좌번호 2 생략)
3	보험 해약반환금	1,051,150	F조합(계좌번호 3 생략)

4		1,082,100	F조합(계좌번호 4 생략)
5		7,457,125	G(계좌번호 5 생략)
6		1,034,758	G(계좌번호 6 생략)
7		870,977	G(계좌번호 6 생략)
8		1,538,440	G(계좌번호 6 생략)
9		4,195,054	G(계좌번호 7 생략)
10		22,777,155	H
11		9,573,280	I
12	전기오토바이	3,950,000	
13	냉온장차	6,000,000	2021. 4. 23. 매각
14	레이 자동차	14,360,000	2021. 8. 12. 매각
15	이 사건 부동산	120,000,000	2021. 4. 20. 매각
	적극재산 합계	194,654,38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적극재산은 194,654,382원, 소극재산은 285,000,000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는 D의 대표이사이면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주채무자인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곧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약 5개월만에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참가인을 비롯한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인 참가인을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한편,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0. 2. 29.부터 피고의 배우자인 J 또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춘천시 K 소재 상가건물 중 39㎡를 임차하여 철물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 J 명의로 각종 보험사 등으로부터 은행대출 및 보험약관대출 등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였고, 피고 명의 계좌에서 A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1. 4. 20. 계약금 1,200만 원, 같은 달 21. 4,800만 원, 같은 달 26. 6,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21. 4. 21.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48,142,648원을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1. 4. 22.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 강제집행이나 보전천분에 대한 기입등기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마) 중소기업은행이 조사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물 시가조사표에 따르면 2020. 10. 6.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조사가격은 총 107,071,15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89,332,500원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7,738,650원)이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A의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없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10. 6. 당시 시가인 107,071,105원과 비교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건물을 임차하여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철물점 등을 계속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2)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그에 따른 대금 납부 과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피고와 A가 서로 아는 사이일 뿐 아니라 D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였으므로 피고는 A 또는 D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와 A가 인접 건물에서 영업을 하여 아는 사이라는 점 외에 피고와 A가 친인척 관계에 있다거나 사업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피고가 A의 신용상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상황 등을 어느 정도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 지장을 받는다거나 A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지 않았는바, 피고가 A의 재산 상태나 재정 상황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으로는 D의 거래처인 'L'에

물품대금 72,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김민욱, 판사 최윤경

[별지]

부동산 목록

1. 춘천시 O 대 83.1㎡

2. 춘천시 O

[도로명주소] 춘천시 N

철근조 슬라브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60.55㎡

2층 63.88㎡

3층 40.55㎡. 끝.

1) A의 적극재산 중 예금 및 보험해약반환금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한 것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명의의 'M'의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춘천시 N(지번 주소 : 춘천시 O)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